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정익중

아동학대와 빈곤은 아동기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다. 특히, 아동학대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가할 때, 아동은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일생 동안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부모는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기에 아이들은 학대 사실을 대부분 숨긴다. 이렇듯 가정 내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

주요 논의 내용

- 아동학대의 현황과 오해
- 학대와 훈육은 어떻게 다른가
- 올바른 양육 방법은 무엇인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 소극적 의미의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실제로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대 사례 중 신체학대 17.6%, 정서학대 38.0%, 방임 7.3%, 중폭학대 34.9%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82.7%가 부모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가 10.9%, 친인척 3.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아동학대는 저항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이 고립된 상황 속에 아동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폭력이다. 더이상 남의 가정사로 치부되거나 남의 가족 내 문제로 인식될 일이 아닌 중대한 범죄다.

학대와 훈육의 차이는 무엇일까? 훈육을 위한 체벌을 학대로 볼 수 있을까? 유교 문화인 아시아권 사회에서 ‘사랑의 매’는 학대의 영역보다는 훈육의 범위로 용인되는 부분이 많았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2021년 1월 폐지되었다. 이제 더이상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이다. 하지만 이를 아는 부모는 56.0%에 불과하다. 법 개정만으로는 인식이나 행동 변화가 쉽지 않다. 우리의 양육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아동 체벌과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아동학대 개념의 도입과 재정립이 필요하다. 훈육은 아이에게 허용되는 행동의 범위를 알려주는 것으로, 양육자는 훈육을 이유로 부정적인 감정을 언행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크게 아동 자신과 부모, 가족, 사회적 요인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학대를 유발하는 원인 간의 상호적 관계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짓기는 매우 어렵다. 아동학대의 잠재적 원인 중 하나는 학대의 대물림이며, 신세대 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도 아동학대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한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 주변에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아동이나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아동학대피해 신고 번호 ‘112’에 신고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정익중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워싱턴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제 2대 원장이다. 저서로 『아동복지론』(공저), 『청소년복지론』(공저), 『사례관리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민간단체들이 함께 긍정양육을 위한 ‘긍정양육 129원칙’을 마련하였다. 아동 존중 원칙에 기반한 차별 없는 양육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원칙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여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이다. ‘긍정양육 129원칙’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을 1가지 기본 전제로 하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와 믿음을 갖는 2가지 실천원리를 바탕으로 다음의 9가지 실천방법을 제시한다.

- ① **자녀 알기**
: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 특성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잘 살펴보기
- ② **나 돌아보기**
: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아켜보기
- ③ **관점 바꾸기**
: 내 자녀의 ‘문제’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에 대해 관점 바꿔보기
- ④ **같이 성장하기**
: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춰 변화시키기
- ⑤ **온전히 집중하기**
: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하기
- ⑥ **경청하고 공감하기**
: 자녀의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기
- ⑦ **일관성 유지하기**
: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하기
- ⑧ **실수 인정하기**
: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 ⑨ **함께 키우기**
: 양육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아동을 촘촘히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만들고자 중앙입양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8개 아동 관련 민간의 중앙기관이 통합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주요 사업들로써 아동의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지원하고 아동의 권리 향상과 인식 향상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발달,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이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 지역 아동 보호체계의 안정화 및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장기 실종아동의 가족을 지원하며, 입양과 가정위탁과 같이 아동이 최대한 가정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의 퇴소 등 보호 종결을 앞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

일시
2024년 4월 15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